#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859 발의연월일: 2021. 2. 2.

발 의 자:오영훈・이규민・김두관

맹성규 · 전혜숙 · 이성만

강선우・남인순・송재호

위성곤・소병훈・김승남

이개호 • 우원식 • 서영교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과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규정이 도입되었으나, 해당 내용이 현 행법에 반영되지 않아 제주 지역의 예술인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 등에 관한 「고용보험법」 규정의 개정사항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실정임.

이에 제주 지역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법」의 개정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규정 등을 현행법에 반영하고,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02조).

법률 제 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2조제3항 중 "제75조"를 "제75조, 제77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62조제1항·제3항"을 "제62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으로, "제77조"를 "제77조, 제77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아 정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고용보험법」 제15조(원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 제20조(일자리 함께하기, 시간선택제고용, 성 장유망업종·지역특화산업, 국내 복귀기업, 전문인력고용, 세대 간 상생고용,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등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제21조 부터 제23조(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년 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 에 따른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 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까지, 제24조(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

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에 한 정한다), 제25조제1항(정규직전 환지원금, 시간선택제전환지원 금, 일·가정양립지원 환경개선 지원금 등 고용안정 및 취업지 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한정한 다), 제26조(직장어린이집의 운 영비용의 지원, 대학취업지원사 업 및 전문계고등학교 취업지 원사업에 한정한다), 제29조제1 항(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 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한 정한다), 제31조(중소기업컨소 시엄사업과 우선선정직종 훈련 사업의 지도·감독에 한정한다),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과 고 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에 관 한 권한에 한정한다. 다만, 고 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 사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과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 공, 직업·훈련 상담 등의 직업 지도에 관한 기법의 연구·개발· 보급, 고용정보의 제공·직업지 도·직업소개의 평가 및 지원,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 운영은 제외한다), 제35조, 제5 3조, 제70조, 제73조의2제1항, 제75조, 제108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 정한다), 제109조(이양된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 다), 제110조(이양된 사무처리 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118조제4항 (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 사의 권한으로 하고, 국가사무 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 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④ 「고용보험법」 제43조제1 항·제2항, 제44조, 제47조, 제51 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 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 제61조, 제62조제1항·제3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1항· 제2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1 항, 제68조, 제69조, 제73조, 제 74조, 제77조, 제93조제3항, 제9

| 제75조, 제77조의4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u>제62조제1항·제2항·</u>        |
| <u>제4항·제5항</u>             |
|                            |
|                            |
| <u>제77조, 제77조의3제1항제3호,</u> |

| 7조제2항, 제98조, 제103조 및 | <u>같은 조 제8항</u> |
|----------------------|-----------------|
| 제111조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                 |
| 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     |                 |
| 으로 한다.               |                 |